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08
----------	------

발의연월일: 2013. 7. 16.

발 의 자: 홍문종 · 고희선 · 이명수  
김을동 · 김무성 · 신성범  
이종진 · 김세연 · 이재영  
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예술소품용 총포는 위험성 때문에 국내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해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경우 실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안전관리 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제적 행사와 활동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다양한 행사 참석 및 활동을 위해 출입국하는 사람들의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소지에 대한 적절한 허가 절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

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실탄 등의 수출입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유통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더불어 현행 제명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내에서의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 라. 식별표지가 없는 권총·소총·기관총·포 및 엽총의 수입을 불허하

고, 권총·소총·기관총·포 및 엽총과 실탄 등의 수출 허가 시 상대국의 수입 허가 및 경유국의 명시적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국내 판매·소지가 금지된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제조·판매·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바.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 허용 대상자를 전시·연예·레저·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출입국자로 확대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민·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사. 안정도시험에 불합격한 화약류의 폐기시한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아.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후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의2 신설).

자.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실탄 등에 대한 불법 제조·판매를 선동·조장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식별표지를

위·변조한 자, 그 미수범 또는 선동·조장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 및 제71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를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압축가스”를 “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제3조제2항 중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을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6조의3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의3(중전의 제6조의2)의 제목 “(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의2) 전단 중 “판매업자가 사망하거나 판매업을 양도한 경우에”를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사망하거나 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양도한 경우에”로 한다.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①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임대업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販賣業者의 缺格事由)”를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중 “석공판매업”을 “석공판매업 및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임대업”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은 행사·노점이나 그 밖의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를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본인의 임대업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총포 및 실탄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① 경찰청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가 없는 권총·소총·기관총·포 및 엽총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

② 경찰청장은 수입된 권총·소총·기관총·포 및 엽총에 식별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출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및 그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뇌관·화약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할 경우 경유국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레저용 모의총의 제조·판매·임대 허가 등) ① 레저용 모의총(서바이벌 레저스포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판매 또는 임대하려는 사람은 제조소·판매소 또는 임대소마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판매소 또는 임대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판매소·임대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판매·임대하는 레저용 모의총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제조소·판매소·임대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 승계 및 영

업 허가의 경우에는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본다.

④ 레저용 모의총을 판매·임대·광고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⑤ 레저용 모의총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본다.

⑥ 레저용 모의총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각각 제조품·판매품·임대품을 소지하는 경우와 서바이벌 레저스포츠를 위하여 서바이벌 레저스포츠 시설 안에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판매·임대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레저용 모의총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레저용 모의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소지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模擬銃砲의 製造·販賣·所持의 금지)”를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수입 또는 소지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하는”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으로, “제조소의 소재지를”을 “제조소 또는 수입지를”로 한다.

- ① 누구든지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수입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수입(수출용 모의총포의 제작을 위한 연구용의 경우와 수출품이 반품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의 중독자

2의2. 치매·정신분열병·분열형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 발육지연·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14조의 제목 “(國際競技에 參加하는 사람에 대한 許可의 特例)”를 “(일시 출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대회에서 사용할”을 “국외에서의 전시(展示)·연예·레저·스포츠 활동 등을 목적으로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 목적에 사용할”로, “석궁의”를 “석궁·레저용 모의총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레저용 모의총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일시 소지신고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민,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람은 그 총포의”를 “사람과 제10조의2제6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은 그 총포 또는 레저용 모의총의”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2항 중 “화약류폐기의 중지를”을 “화약류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제10조의2제6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지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

궁·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을 서로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과”를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하는”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하는”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으로,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② 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신고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레저용 모의총에 관한 법령

2. 레저용 모의총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제32조제4항 중 “폐기하여야 한다”를 “안정도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중 “석궁”을 “석궁·레저용 모의총”으로 한다.

제41조 중 “석궁”을 “석궁·레저용 모의총”으로, “판매업자”를 “판매업자·임대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銃砲·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검사)”를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석궁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궁, 제9조에 따라”로, “석궁중”을 “석궁 및 제10조의2에 따라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수입한 레저용 모의총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석궁의”를 각각 “석궁·레저용 모의총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석공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소지”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소지”로, “허가관청은”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으로,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에 대한”을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레저용 모의총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은 제6항에 따른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레저용 모의총”으로 한다.

제43조 본문 중 “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석공의 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소·판매소·임대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레이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4항 또는 제10조의2제8항 단서에 따라”로, “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전자충격기·석궁 또는 레이저용 모의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5조(제7조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45조의2제1항 본문 중 “제4조의2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를 “제4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조제1항·제2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말한다”를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통보) ①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석공”을 각각 “석공·레저용 모의총”으로 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임대·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제49조 본문 중 “판매업자”를 “판매업자·임대업자”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석공안전검사”를 “석공·레저용 모의총 안전검사”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총포”를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 및 레저용 모의총”으로 한다.

제63조 중 “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로 한다.

제64조 중 “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임대소”로 한다.

제66조 중 “석공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석공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임대업”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6조의2제1항(총포에 한한다)·제2항(총포에 한한다), 제9조제1항”으로, “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를 “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제3항(총포에 한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 중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및 그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뇌관·화약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선동·조장한 자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6조의2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으로, “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제4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또는 제5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별표지가 없는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을 수입하거나 그 식별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8.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및 그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뇌관·화약에 대한 제3호 또는 제7호의 위반 행위를 선동·조장한 사람

②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및 그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뇌관·화약에 대한 제1항제3호 또는 제1항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2조제1호 중 “제43조의 규정을”을 “제43조(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

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의 규정”을 “제41조(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또는 제42조제7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제42조제1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또는 제5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으로,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를 “수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제1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레저용 모의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레저용 모의총에 관하여 제10조의2제1항·제3항(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5항·제7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레저용 모의총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한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의2제9항 또는 제4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별표지 없는 총포 등의 수출·수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용 모의총포 등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 수출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시 수출입을 허가하거나 일시 소지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레저용 모의총 소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서바이벌 레저스포츠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레저용 모의총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레저용 모의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레저용 모의총을 계속하여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은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銃砲·刀劍·火藥類等 團束法の 規定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7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1항”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u></p> <p>제1조(目的)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u>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u>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定義) ①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생략)</p> <p>③ 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p>	<p style="text-align: center;"><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p> <p>제1조(目的) ----- ----- ----<u>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u>----- ----- ----- ----- ----- ----- -----.</p> <p>제2조(定義) ①----- ----- ----- ----- ----<u>가스</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火工品: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2. (생략)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나. ~ 차. (생략)

④ ~ ⑥ (생략)

第3條(적용의 배제) ① (생략)

②제2조제3항제3호 “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신설>

-----  
-----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 차.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第3條(적용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

<신 설>

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①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제6조의2(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제4조의2의 규정은 판매업자가 사망하거나 판매업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본다.

제7조(販賣業者의 缺格事由) 제5

조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行商과 屋外販賣금지) 총

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으로서나 노점 그 밖의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 지위승계) -----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사망하거나 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양도한 경우에-----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  
----석궁판매업 및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임대업-----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

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의 옥외에



<신 설>

제9조의2(총포 및 실탄 등에 대

한 수출입 제한) ① 경찰청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가 없는 권총·소총·기관총·포 및 엽총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

② 경찰청장은 수입된 권총·소총·기관총·포 및 엽총에 식별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출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및 그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뇌관·화약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할 경우 경유국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所持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所持의 금지) -----

-----  
-----  
-----  
-----  
-----  
-----

1. ~ 5. (생략)

<신설>

6. ~ 10. (생략)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레저용 모의총의 제조·판매·임대 허가 등) ① 레저용 모의총(서바이벌 레저스포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판매 또는 임대하려는 사람은 제조소·판매소 또는 임대소마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판매소 또는 임대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판매소·임대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판매·임대하는 레저용 모의총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제조소·판매소·

임대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 승계 및 영업 허가의 경우에는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본다.

④ 레저용 모의총을 판매·임대·광고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⑤ 레저용 모의총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본다.

⑥ 레저용 모의총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용 모의총

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각각 제조품·판매품·임대품을 소지하는 경우와 서바이벌 레저스포츠를 위하여 서바이벌 레저스포츠 시설 안에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판매·임대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레저용 모의총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레저용 모의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소지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模擬銃砲의 製造·販賣·所持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수입 또는 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소지許可)

①·② (생략)

<신설>

것(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수입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수입(수출용 모의총포의 제작을 위한 연구용의 경우와 수출품이 반품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조 또는 수입하는-----  
-----  
-----제조소 또는 수입지를-----  
-----.

제12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소지許可)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③ (생략)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

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の 缺格事由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생략)
-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신 설>

- 3. ~ 7. (생략)
- ②·③ (생략)

제14조(國際競技에 參加하는 사람에 대한 許可의 特例) ①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の 缺格事由등) ①-----

- 1. (현행과 같음)
-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의 중독자

2의2. 치매·정신분열병·분열형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 발육지연·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람

- 3. ~ 7.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일시 출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 등의 특례) ①-----  
-----국외에서의 전시(展示)·연예·레저·스포츠 활동 등을 목적으로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







다.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된다.

제22조(교육실시) ①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

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을 서로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

제22조(교육실시) ①-----  
-----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  
-----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 밖의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火藥類의 安定度試驗) ① ~ ③ (생략)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고를 받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④-----하거나 신  
고를 받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32조(火藥類의 安定度試驗)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정도시험결과

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제35조(盜難·紛失의 申告)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定期安全檢査)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銃砲·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檢査)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분사

사유를 소명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盜難·紛失의 申告) -----  
-----  
석궁·레저용 모의총-----  
-----  
-----

제41조(定期安全檢査) -----  
-----  
석궁·레저용 모의총-----  
판매업자·임대업자-----  
-----  
-----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의 檢査) ①  
-----  
-----  
-----  
석궁,  
제9조에 따라-----  
-----

기·전자충격기·석궁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 검사  
업무를 행하는 총포·화약안전  
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석궁 및 제10조의2  
에 따라 레저용 모의총의 제조·  
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  
수입한 레저용 모의총 중-----

② -----  
-----석궁·  
레저용 모의총의-----

③ (현행과 같음)

④-----  
-----석궁·레저  
용 모의총의-----

⑤-----  
-----석궁·레저  
용 모의총은 판매 또는 임대하  
거나 판매 또는 임대-----

⑥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소지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관청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3조(完成檢査)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⑥ -----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소지-----  
-----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레저용 모의총에 대한-----  
-----.

⑦-----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은 제6항에 따른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레저용 모의총-----.

제43조(完成檢査) -----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  
-----  
-----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  
-----  
-----  
-----

제44조(出入·檢査등)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出入·檢査등) ①-----  
-----  
-----  
-----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소·판매소·임대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  
-----  
-----  
-----  
-----  
-----

- ② (생략)
- ③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  
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  
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  
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  
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製造業者등에 대한 行政  
處分)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  
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  
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

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수  
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  
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레저  
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  
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  
-----.

제45조(製造業者등에 대한 行政  
處分) ①제4조제1항·제2항, 제6  
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관  
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레저용 모의총  
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  
대업자-----  
-----  
-----.

1. (현행과 같음)

1의2. -----  
제3조제4항 또는 제10조의2제  
8항 단서에 따라-----

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  
-----  
-----전자충격기·석궁 또는 레저용 모의총-----  
-----

2.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5조(제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5조(제7조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45조의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제4조의2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①제4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  
-----  
-----  
-----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46조(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① 제12조제1항·제2항·제14조·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받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①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  
-----.  
-----  
-----  
-----

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 1. (생략)
- 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후단 신설>

- 3.·4. (생략)
- ② ~ ⑦ (생략)
- <신설>

제46조의2(청문) (생략)

-----  
-----  
-----.

- 1. (현행과 같음)
- 2. -----  
----- 이 경우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3.·4.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통보) ①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청문) (현행 제46조의2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 등)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와 같음)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레저용 모의총의 소지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임대·수수·수출입·

4. (생략)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4. (현행과 같음)

5. -----  
-----석궁·레저용 모의총  
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  
-----

②-----  
-----  
-----  
-----석궁·레저용 모의총-----  
-----  
-----

③-----  
-----석  
궁·레저용 모의총-----  
-----  
-----

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會員)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事業)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 10. (생략)

제58조(財政) ①협회의 운영 및

-----  
-----.

제49조(會員) -----

판매업자·임대업자-----

-----.

제52조(事業) -----

1. (현행과 같음)

2. -----석궁·레저용 모의총 안전검사-----

3. ~ 10. (현행과 같음)

제58조(財政) ①-----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생략)
- 2.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

3. (생략)

② (생략)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看板 그 밖의 標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 1. (현행과 같음)
-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 및 레저용 모의총-----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  
-----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  
-----  
-----.

제64조(看板 그 밖의 標識) -----  
-----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임대소-----  
-----  
-----.

제66조(廢業 및 休業申告등)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1년 이내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罰則)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

제66조(廢業 및 休業申告등) -----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석공·레저용 모의총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임대업-----

제70조(罰則) ①-----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2제1항(총포에 한한다)·제2항(총포에 한한다), 제9조제1항-----

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신 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

-----제2항  
(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제3항(총포에 한한다)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 중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및 그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뇌관·화약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선동·조장한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

제71조(罰則) ① -----  
-----  
-----.

1. -----  
-----  
-----  
-----제6조의2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

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생략)

3.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 6. (생략)

<신설>

<신설>

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4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또는 제5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별표지가 없는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을 수입하거나 그 식별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8.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및 그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뇌관·화약에 대한 제3호 또는 제7호의 위반행위를 선동·조장한 사람

<신 설>

제72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생략)

3.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②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공포탄 및 그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뇌관·화약에 대한 제1항제3호 또는 제1항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2조(罰則) -----  
-----  
-----.

1. -----  
-----  
-----  
-----  
-----제43조(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를-----  
-----

2. (현행과 같음)

3. 제41조(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또는 제42조제7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

4. 제42조제1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또는 제5항(레저용 모의총은 제외한다)---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사람

6. (생략)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  
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 <단서 신설>

제73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 4. (생략)

-----  
-----수입

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5. 제44조제1항(레저용 모의총  
은 제외한다)에 따른-----  
-----  
-----

6. (현행과 같음)

7. -----  
-----  
-----  
----. 다만, 레저용 모의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罰則) -----  
-----  
-----  
-----.

1. -----제6조의3-----  
-----  
-----  
-----  
-----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74조(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1. ~ 5. (생략)
- 6.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

5. 레저용 모의총에 관하여 제10조의2제1항·제3항(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5항·제7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레저용 모의총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

제74조(過怠料) ①-----  
-----  
-----부과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0조의2제9항 또는 제47조 제3항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